

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(안 제5조의2)
- 나. 행정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관계근거 :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-602호(2012.2.28)

경상북도 세정과-3089호(2012.3.6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의 제목 “(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”을 “(무인민원증명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에”를 “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,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이라 한다)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”을 각각 “무인발급기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0조 단서 중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”을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계기 및 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)”을 “(계기 및 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”을 각각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”으로,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 상”을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·지방세시스템 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4항 중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”을 “무인발급기·주민시스템·지방
세시스템”으로, 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”을 “별지 제11
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”으로 한다.
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 방 세 시 스 템 수 입 증 지 요 금 관 리 대 장

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

년월일	금일까지 금액(A)	전일까지 금액(B)	금일결손(C)		금일발행 (A-B-C)		결 재		
			매수	금액	매수	금액	담당자	업무담당	과·읍면 동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발행개시일,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	제5조의2(무인민원증명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) ① --- ----- -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,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----- ----- . ② 무인발급기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----- ----- ----- ----- . ③ ----- 무인발급기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

제20조(판매인수수료) 판매인에
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의 10
0분의 5로하고 금고는 이를 할
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
다. 다만, 계기 및 무인발급기
· 주민시스템 사용 시에는 수수
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21조(계기 및 무인발급기 · 주
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)
① · ② (생 략)

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 · 주민시
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
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“결
손”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
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 ·
주민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
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
다.

④ 무인발급기 · 주민시스템 사
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1
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
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, 결

-----.

제20조(판매인수수료) -----

----- 무인발급기
· 주민시스템 · 지방세시스템 -

-----.

제21조(계기 및 무인발급기 · 주
민시스템 · 지방세시스템 사용
수입금의 정산) ① · ② (현행과
같음)

③ ----- 무인발급기 · 주민
시스템 · 지방세시스템-----

----- 무인발급기 · 주민시스템
· 지방세시스템 상-----

-----.

④ 무인발급기 · 주민시스템 ·
지방세시스템 -----
-----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
제12호서식 또는 별제 제13호서

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,	<u>식</u> ----- ----- -----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관련근거

-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-602호(2012.2.28)
경상북도 세정과-3089호(2012.3.6)